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6
----------	-------

제출년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현옥순, 한명훈, 이재복
이진분, 유민희, 김재국
설호영, 김태성, 염정우
윤성영, 천복희, 김진숙
박은정 의원(13인)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5. 9. 16.)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따라 지급하던 '배우자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하여 예우 및 지원을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8호)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함(안 제8조 및 제10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변경함(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

3. 일부개정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4. 현행 조례	: 붙임 2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3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4
○ 비용추계서	
7. 부서검토의견	: 붙임 5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련서류”를 “관련 서류”로 한다.

제15조 중 “공훈선양사업”을 “공훈 선양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명예수당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8조제1호나 목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u>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용어의 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제2조(<u>정의</u>) ----- ----- <u>용어의 뜻은</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u>국가보훈처장</u> 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4. ----- <u>국가보훈부장관</u> -----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제8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u>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가 사망한</u>	제8조(수당 등 지급) ----- ----- <u>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u>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1. · 2. (생 략)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다만, 보훈
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아니
하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
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지급신청) ① 수당 등을 지
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
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1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
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부적
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
훈선양사업의 추진과 보훈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지급신청) ① -----

----- 별지 제2호서식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

----- 관련 서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공
훈 선양사업 -----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 참 전 □ 그 외 보훈대상자				30 일
신청인	성 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동 :)		
	전 입 일			
	연 락 처 (전화번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등) 2. 본인 동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가주지 확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 참 전 □ 그 외 보훈대상자				30 일
신청인	성 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동 :)		
	전 입 일			
	연 락 처 (전화번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동장사본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1. 주민등록등본(가주지 확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동 :)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동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사망자 거주지 확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동 :)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동장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1. 주민등록등본(가주지 확인)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국가유공자)	성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배우자				
	자				
	자				
사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청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국가보훈대상자(유족) 확인원 등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등) 2. 가족관계확인원(국가유공자(유족) 관계 증명서) 1부		1.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참전 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신청인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급 계과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청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사망확인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동계본 1부		1. 안산시 관할인 (년 월 일) 2. 지급 계좌 정보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국가보훈대상자)	성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사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청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2. 자동차등록증 1부 3. 국가보훈대상자(가족)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1.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삭 제>

【붙임 2】 현행조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설 2015.01.01.>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01.01.>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본조개정 2015.01.01.]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1.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개정 2025. 11. 17.>
7. 보훈관련 시설물의 정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보훈단체에게 지
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복지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11.20., 2023. 11. 8.>

1. 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진료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 <개정 2016.1.11.>
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증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이하 “가족우대카드”라 한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0.><개정 2023. 11. 8., 2025. 11. 17.>

③ 제2항의 가족우대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11.20.>

④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 우대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0.><개정 2023. 11. 8., 2025. 11. 17.>

제8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4. 28.>

1. 보훈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6만원 <개정 2018. 4.20., 2022.4.27., 2023. 4. 28., 2025. 11. 17.>

나.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월 12만원 <개정 2018.4.20., 2022.4.27., 2023. 11. 8., 2025. 11. 17.>

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30만원 <개정 2025. 11. 17.>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다만,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 4. 28.><개정 2023. 11. 8., 2025. 11. 17.> [본조신설 2015.01.01.]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9.12.24., 2023. 11. 8., 2025. 11. 17.>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본조신설 2015.01.01.]

제10조(지급신청) ①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7.>

④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1.01.]

제11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신청계좌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1. 17.>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01.01.]

제12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본조신설 2015.01.01.]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후 지급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1.01.]

제14조(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2025. 11. 17.>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의 추진과 보훈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2025. 11. 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부 칙(2017.11.20.)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2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7.)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28.)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1. 1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참 전 ☐ 그 외 보훈대상자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 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동 :)				
	전 입 일					
	연 락 처 (전화번호)					
예금계좌		예금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등) 2. 본인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동 :)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사망자 거주지 확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7.11.20.>

[illegible]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7.11.20., 개정 2023. 4. 28., 2023. 11. 8.>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제7조제2항 관련)

(앞면)

←----- 8.6cm -----→		
5.4 cm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	
	<table><tr><td style="vertical-align: top;">발급번호 : 사진 2.5cm × 3.0cm </td><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0px;">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대상(보훈번호) : 유공자와의 관계 : 차량번호 : 유효기간 : 발 행 일 :</td></tr></table>	발급번호 : 사진 2.5cm × 3.0cm
발급번호 : 사진 2.5cm × 3.0cm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대상(보훈번호) : 유공자와의 관계 : 차량번호 : 유효기간 : 발 행 일 :	
안 산 시		

(뒷면)

이 용 안 내
1. 이 우대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안산시 관내 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주차장 이용시 차량번호와 본인이 일치하여야 합니다.(사업용차량 제외)
3. 이 우대카드를 분실·훼손·습득 시 안산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용시설 :
5. <u>문의처</u> : 안산시 복지정책과 ☎ 481-2861)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3. 11. 8.>

[illegible]

□ 부 대 의 건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6월 5일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 되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개편된 바 있으나, 본 조례가 2023년 11월과 2025년 11월에 일부개정을 거치면서도 조례 내 용어에 해당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었음.
-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조례를 정비하기 바람.
-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받는 지원에 누락 또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함.